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920

발의연월일: 2025. 4. 17.

발 의 자:정희용·박준태·주호영

김선교 • 박덕흠 • 김형동

김성원 • 고동진 • 김태호

서천호 · 임이자 · 윤재옥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북 북동부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산림 자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,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.

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산림 복구 및 재해방지 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나, 기존 법령상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,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 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.

이에 따라, 산불진화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산림사업을 시행 하여야 하는 경우 산주 동의 없이 우선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사후에 통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22조).

법률 제 호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2조제1항 단서 중 "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"를 "우선 산림사업을 시행한 후 다음 각 호에따라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산림소유자의 주소지로 산림사업 시행 사실을 통지
- 2. 제1호에 따른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·특별 자치도·시·군·자치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30일 이상 산림사업 내용을 공고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산림사업의 시행) ① 산림	제22조(산림사업의 시행) ①
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,	
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	
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	
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	
아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산불	,,
피해로 인하여 산사태 등 안전	
사고의 우려가 높아 피해 입목	
의 제거 등 긴급히 산림사업의	
실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	
경우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	
가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로	
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	
으나 산림소유자의 주소불명,	
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산림	
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	
때에는 특별자치시 • 특별자치	우선 산림사업을 시행
도・시・군・자치구의 게시판	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
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	
상 피해목 벌채 계획 등 산림	
사업 내용을 공고하는 것으로	
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	
수 있다.	

<u><신 설></u>	1. 산림소유자의 주소지로 산림
	사업 시행 사실을 통지
<u><신 설></u>	2. 제1호에 따른 통지가 불가능
	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
	·특별자치도·시·군·자치
	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
	이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방법에 따라 30일 이상 산림
	사업 내용을 공고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